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7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525108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고,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철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1.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5251083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소외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3. 11. 27.자 30,000,000원 및 같은 날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소외 E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3. 11. 27.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원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소외 E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 11. 27.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파산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E은 그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A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피고 B은 E의 부인이고, 피고 D은 E의 처남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던 회사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A은 2011. 10. 10. R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3. 11. 10., 약정이율 연 14%, 지연배상금을 연 26%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1,675,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R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 239541호로 R와 E 등을 상대로 "R는 원고에게 1,618,949,759원 및 그 중 1,197,229,702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은 R와 연대하여 금 1,67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23.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과 피고들 사이의 송금내역

1) E은 2013. 11. 27.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E 계좌'라 한다)에서, ① 피고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B 1계좌'라 한다)로 30,000,000원을 송금(이하 '제1송금행위'라 한다)하였고, ② 피고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피고 회사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을 송금(이하 '제2송금행위'라 하고, 제1송금행위와 제2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2) 피고 B 계좌로 입금된 위 30,000,000원은 다시 아래와 같이 송금되었다.

▷ 2013. 11. 27. 피고 회사 계좌로 15,000,000원 송금

▷ 2013. 11. 29. 피고 B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 이하 'B 2계좌'라 한다)로 15,000,000원 송금

3) 피고 회사는 2013. 12. 10.부터 2014. 8. 14.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이하 'D 계좌'라 한다)로 각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2013. 12. 16.부터 2014. 8. 14.까지 B 1계좌, 피고 B 명의 H은행 계좌(O, 이하 'B 3계좌'라 하고, B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B의 계좌'라 한다)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회사 계좌에서 피고 D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35,000,000원

▷ 2013. 12. 10. 5,000,000원

▷ 2014. 1. 9. 5,000,000원

▷ 2014. 6. 2. 7,000,000원

▷ 2014. 6. 13. 5,000,000원

▷ 2014. 7. 15. 6,500,000원

▷ 2014. 8. 5. 2,000,000원

▷ 2014. 8. 14. 4,500,000원

○ 피고 D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38,810,000원

▷ 2013. 12. 16. 5,000,000원(B 1계좌)

▷ 2014. 1. 9. 8,100,000원(B 1계좌)

▷ 2014. 1. 15. 1,800,000원(B 1계좌)

▷ 2014. 2. 18. 1,200,000원(B 1계좌)

▷ 2014. 3. 15. 2,900,000원(B 1계좌)

▷ 2014. 4. 16. 2,310,000원(B 1계좌)

▷ 2014. 5. 16. 2,000,000원(B 1계좌)

▷ 2014. 6. 2. 7,000,000원(B 1계좌)

▷ 2014. 6. 13. 7,000,000원(B 3계좌)

▷ 2014. 7. 15. 8,600,000원(B 3계좌)

▷ 2014. 8. 14. 6,000,000원(B 1계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E이 2013. 11. 27. B 1계좌로 송금한 30,000,000원은 E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고, 같은 날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도 피고 회사 계좌와 D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다. 한편 위 각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E이 그 처인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증여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만약 E이 2013. 11. 27. 피고 회사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 B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면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증여로써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위 금원을 2013. 12. 10.부터 2014. 8. 14.까지 피고 D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20,000,000원 증여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피고 D은 전득자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이를 E이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후 그 돈은 피고 B의 계좌로 반환되어 피고 B의 개인 용도로 최종 사용되었고, 위 대여로 인하여 E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이상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E과 피고 회사 사이의 2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1) , 수익자인 피고 회사와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 2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A이 2011. 10. 10. R에게 20억 원을 지급한 것은 A이 소외 주식회사 P이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R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대출을 가장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R에게 지급한 20억 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은 주식회사 P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으로 입금되었고, A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A의 R에 대한 대출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A의 E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의

소제기일(2018. 11. 26.)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열람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3. 11. 27.경 E은 A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액과 같은 액수의 R에 대한 사전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었다고 할 수 없다.

4) E이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E이 그 부인인 피고 B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자 E이 수령한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E이 피고 회사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의 경우, E이 처남인 피고 D에게 대여해준 돈이고, 피고 D이 위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 다시 E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20,000,000원 송금이 피고 B 혹은 피고 회사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대여로 인하여 E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R의 채무를 E이 보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E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 계좌의 조회가 이루어진 2018. 10.경 이후 비로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 후 제기되었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대출약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A에 대한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은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은행이 P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기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한편,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 14 내지 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S 주식회사, T주식회사, U, V은행, W은행, H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 X은행, M은행, F은행, Y, Z은행, AA, AB, A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3. 11. 17.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3. 11. 17.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E의 연대보증금 채무는 약 1,307,596,227원에 달하였다.

② 2013. 11. 27. 당시 E의 계좌 잔고는 총 61,955,434원이었고, E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당시 E은 R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채무 상당의 사전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R는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E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제1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송금행위는 피고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E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은 제1송금행위 전후로 피고 B에게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송금하여 주곤 하였고, R로부터의 급여를 B의 계좌로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B은 이를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액수는 통상 매달 5,000,000원을 넘지 않았다.

② 제1송금행위 당시 피고 B에게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30,000,000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였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돈 중 15,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15,000,000원은 B의 계좌에 잔존하다가 피고 B의 아파트 매수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③ E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55,000,000원의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즉시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당시 R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R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E은 차후 자신이 연대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될 것을 알고 퇴직연금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키고자 제1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제2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송금행위가 피고 B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제2송금행위로 2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제1송금행위에 따라 송금받은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다시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가수금 변제의 형태로 총 35,000,000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3. 12. 10.부터 2014. 8. 14.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E, 혹은 피고 B으로부터 위 35,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뒤, 피고 B의 계좌에 35,00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한편, 피고 D이 2013.12. 16.부터 2014. 8. 14.까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은 위와 같이 E 혹은 피고 B이 송금하여 준 액수를 상회하는 총 38,810,000원에 달하고, 피고 D은 그 후로도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 D이 단순히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고 B에게 모두 귀속시키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 아니고, 피고 D과 피고 B 혹은 E 사이의 별개의 거래관계에 기해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 제1송금행위 관련 B의 악의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2013. 11. 27.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2송금행위의 경우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송금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송금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제2송금행위가 대여라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이 E의 계좌가 아닌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E과 피고 회사, 혹은 피고 D이 제2송금행위 당시부터 2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2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령 E이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고, 이를 그 자신이 소비하거나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는 것인바, 이 경우 대여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판사신한미

1) 혹은 소비대차 약정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